

건전한 IP 육성을 위한 전향적 노력 시급

최근 성인정보서비스의 유해성 문제로 검찰이 한국통신, 데이콤, 한국PC통신, 나우콤 등 PC통신업체들을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성인정보서비스가 전격 중단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PC통신 관계자들과 이용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으로 국내 IP산업은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성인정보서비스 유해성 논란의 발단, 법적근거, 대책에 대해 살펴봤다.〈글/박민식 기자〉

유해성 논란

이번 사건은 검찰이 PC통신내 성인정보서비스에 대해 음란물 유통과 유통방조의 혐의로 정보제공업자와 PC통신사 성인정보 담당자를 전면 소환·수사한 끝에 일부관계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유해성 논란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되었다. 법원은 당일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수원지검의 영장 신청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성인정보서비스의 유해성 논란이 여론의 도마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

이번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형사1부(전창영 부장, 임무영 검사)에 따르면 성인정보를 제공하는 업체에게는 동영상, 사진, 음란소설 등을 제공하는 음란물 유통 혐의가, PC통신 담당자에게는 정보제공업들이 음란물을 올리는 것을 방조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수원지검은 PC통신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정보가 대부분 청소년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음란물이라는 점을 들어 유해 판정을 내리고 PC통신 사업자들에게는 음화배포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에 PC통신업체들은 “성인정보 서비스는 원천적으로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없게 돼 있으며 성인정보 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작업을 일일이 거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성인정보서비스는 청소년들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검찰이 지적한 음란성은 아예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PC통신업체는 이번 검찰의 수사 방향이 PC통신 내에서의 음란물 유통을 근절하겠다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 유통이 개방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

이라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의 반응

이번 사건때문에 개설된 PC통신 토론방에는 통신인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한 통신인은 “통신망도 하나의 세상이다. 우리가 숨쉬는 이세상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있다. 통신망에도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성인들이 있다. 어린이를 위한 공간, 청소년을 위한 공간 그리고 여성들만을 위한 공간이 있다. 그런데 왜 성인들만을 위한 공간은 안된다는 것인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통신이용자는 김대중 대통령이 언급했던 “대중문화를 관이 나서서 해결하면 그 문화는 죽는다. 민간 위원들을 선임해서 선별, 해결해야 한다”는 말을 인용하면서 “대중문화에 관해 정부가 나서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검찰의 수사를 비난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발생하면서 PC통신 관계자들은 성인정보 이용자들이 대거 인터넷의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할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현재 이런 예상대로 검색엔진 심마니에는 ‘SEX’나 ‘누드’ 등 적설적인 단어가 사건전보다 2만건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국내 성인정보 이용자들이 대거 인터넷의 포르노사이트로 옮겨간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음란물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업체관계자들은 PC통신에 제공되는 성인정보는 모두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허가받은 IP들이 제공하는 정보들이어서 음란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음란이라는 용어가 법률상 명확치 않

다고 주장하면서 명확한 법규정을 요구했다. 또한 천리안의 한 이용자는 음란이란 것은 전전한 도의감을 가진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할 정도라는 형법의 조항을 예로들면서 “우리나라의 법에 규정한 음란물에 대한 기준이 애매모호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를 찾아보던 중에 이번 사건과는 다르지만 음란물에 대해 규정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한다.

얼마전 음란간행물을 발간한 출판사가 음란이라는 개념이 불합리적 개념으로 법률상 명확하지 않아 법치국가 원리의 하나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위헌 심판을 청구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음란이란 인간존엄 내지 인간성을 왜곡하는 노골적이고 적나라한 성표현으로서 오로지 성적흥미에만 호소할 뿐 전체적으로 보아 하등의 문학적, 예술적, 과학적 또는 정치적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으로서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사상의 경쟁 메카니즘에 의해서도 그 해악이 해소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음란표현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대법원도 형법 제243조의 ‘음란’ 개념을 해석·적용하면서 “음란한 문서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 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 문서의 음란성 판단에 있어서는 당해 문서의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묘사서술의 정도와 수법, 묘사서술이 문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 문서에 표현된 사상 등과 묘사서술과의 관련성, 문서의 구성이나 전개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정도, 이들의 관점으로부터 당해 문서를 전체로 보았을 때 주로 독자의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으로 인정되는나의 여부 등 모든 점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의 사정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것이 공연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고 판시하면서 법률조항의 ‘음란’ 개념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국내 성인정보서비스 현황

업체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으로 국내 영세 IP제공자들의 뿌리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에 서비스되고 있는 성인정보서비스는 800여개 정도이며 이용자는 60만명, 업체수는 250개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PC통신이용자 중 20%가 성인정보를 이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을 통해 업체가 연간 1백50억 이상의 이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성인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중소 IP들이 성인정보에서 얻은 매출로 다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검찰의 조치는 국내 IP업계에 큰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대책은 없는 것인가

기본적으로 청소년에게 성인정보가 유통될 때는 유해하다고 인정해야 한다. 그렇다고 성인들이 즐길 수 있는 성인문화를 말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성인도 성인나름대로의 문화가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여러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성인들의 의식개선이다. 성인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도 성인이고 대부분 즐기는 사람도 성인이다. 또한 적발하는 사람도 성인이다. 그러므로 가장 근본적인 것은 성인들 자신이 진정 성인임을 자처하고 그에 알맞은 책임 또는 의식을 갖는 것이다. 진정한 문화의 기준이나 수준은 검찰, 국회, 대통령도 만들 수 없는 것이며 바로 성인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실무적인 차원에서 자율적인 단체 및 PC통신사의 역할이다. 현재 통신사들은 성인정보를 통해 연간 200억 이상의 이익을 보고 있다. 이제는 올바른 성인문화를 위해 통신사도 투자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예를 들어 모니터링 요원을 강화해 음성정보를 자율적으로 적발하고 정화하는 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청소년들이 성인정보를 접근할 수 없도록 기술적 장치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의 역할이다. 이번 사건으로 국내 IP사업이 혼들릴 때 과연 IP업체를 담당하고 있는 정보통신부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또한 이번 사건에서 검찰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는 형식적이고 관료적인 행동이었는지 묻고 싶다.

이번 기회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역할도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부도 현재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PC통신내 음란정보의 범위와 한계를 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국내 IP산업 육성을 위한 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림〉 PC통신에 개설된 성인정보서비스 토론판